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19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원더풀 복지봉사단 운영 규정

2. 개정이유

- 원더풀 복지봉사단 단원 구성과 모집·가입방법 등 신속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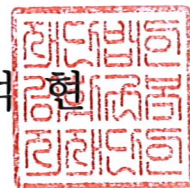
3. 주요내용

- 제7조제1항 : 단원 구성 인원 변경 30명 → 40명
- 제8조제2항 : 모집 시기 매년 1회 → 탈퇴 등의 사유로 단원 확충 필요 시
- 제9조제2항 : 추가 단원가입 동의 여부 의견수렴 주최(단원들) → 임원

제23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원더풀 복지봉사단 운영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2월 23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한 석

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20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복무 규정

2. 개정이유

- 장기재직자 휴가 신설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를 향상하고
- 군 입영 동행 휴가를 보장하여 가족친화와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등 사회전반의 성실한 복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○ 제29조(특별휴가)

-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의 장기재직휴가 신설(17항)

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: 10일
2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5일
3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25일
4. 재직기간 30년 이상: 30일

- 군 입영 자녀에 대한 1일의 입영 동행 휴가 신설(18항)

제23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복무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2월 23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한 석 현

